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1081호 2015. 4. 20.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-5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-5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----- 3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-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--- 4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-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
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----- 5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517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
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
송달 공고 ----- 6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547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노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
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----- 7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 - 50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04. 17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건지로218번길 13외 8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5. 04. 1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5-04-17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-177	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18번길 13 (석남동)	2009-09-22	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,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54-6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5번길 4-4 (경서동)	2009-09-22	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3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48-9	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42번길 26 (경서동)	2009-09-22	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4	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0, 58-22, 59, 60-1, 60-2, 61, 61-1, 61-2, 62, 73-1, 73-2, 73-4, 73-5, 73-7, 73-8, 73-9, 73-10, 73-11, 73-12, 73-13, 73-14, 73-15, 73-17, 73-19, 73-20, 73-33, 73-36, 73-41, 73-43, 74, 75, 76, 77, 78, 79, 80-1, 80-2, 80-3, 81-1, 81-2, 81-3, 81-4, 82, 83-	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2로 37 (가정동)	2012-10-25	" 봉오재" 란 옛지명을 반영한 두번째 도로	
5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343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50 (왕길동)	2008-12-31	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,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6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03-4	인천광역시 서구 이화로26번길 21 (경서동)	2012-10-25	이화로 시작지점부터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7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03-3	인천광역시 서구 이화로26번길 23 (경서동)	2012-10-25	이화로 시작지점부터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8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03-11	인천광역시 서구 이화로26번길 7 (경서동)	2012-10-25	이화로 시작지점부터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9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50-43	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40 (경서동)	2009-09-22	도로진행방향에 호두산이 위치하고 있어 호두산로라 명명함	

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- 51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15. 04. 17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
마전동 904-9	완정로202번길 4	2015-04-17	건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 - 52호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

『주택법』 제16조(사업계획의 승인)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4월 13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 업 명 : 공동주택(도시형생활주택-단지형연립주택) 및 복리시설 건립공사
2. 사업주체 : 천수범 외 2인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- 가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1-1외 2필지
 - 나. 대지면적 : 5,582.10m²
 - 다. 사업규모 : 연면적 11,004.35m²(지하 1층, 지상 5층)
 - 라. 용 도 : 공동주택 6개동(도시형생활주택-단지형연립주택 140세대) 및 복리시설 1개동(근린생활시설 12개호)
 - 마. 사 업 비 : 11,010,820천원
4. 사업기간 : 2015. 02. ~ 2015. 10.
5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 - 가.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 - 나.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 - 53호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

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5-80호(2015.04.02.)로 결정(변경)된 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(☎032-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15. 4. 2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학교의 종류 및 명칭
 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고등학교)
 - 명 칭 : 인천세무고등학교
2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214-1번지 일원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【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5-80호, 2015. 4. 2.】
 -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학교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학교	고등학교	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 214-1번지 일원	20,537	감)46	20,491	인고 제208호 (2011.8.22.)	

-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학교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학교 (인천세무고등학교)	○면적 변경(감46㎡) - 면적 : 20,537㎡→20,491㎡	○지적분할 및 도시계획시설 선형 불부합 조정

4. 지형도면 : 게재생략
(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, <http://luris.mltm.go.kr> 열람 가능)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- 517호

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
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)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의2(이행강제금)부과 규정에 의하여 부과 후 미납하여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처 분 명 :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
2. 근거법규 :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, 제30조의2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
3. 공고대상

위 치	행위자 (토지소유자)	위 반 사 항	반송주소
연희동 산148-12	고○태	조립식패널/주택/77.0㎡,철파이프조/ 창고/27.0㎡	인천 서구 국제대로 255 (연희동)

4. 공고기간 : 2015. 04. 14 ~ 2015. 04. 29(16일간)
5. 공고장소 : 각 자치단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
6.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GB관리팀(☎032-560-4684)

2015. 4. 14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- 547호

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4월 20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- ' 2011.7.21 하수도법 개정사항으로,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 하수관거 정비로 인한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·운반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, 분뇨수집·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시 지원하는 제도로써
- 폐업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 개정내용

- 하수도법제56조의 2,동법시행령 제33조의 2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의 대행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
- 폐업지원에 관한 조항 ④ ~⑦ 신설

3. 의견 제출

- 이 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자원순환

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(☎560-4425) 또는 Fax(560-2760)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4. 참고 자료

-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(신·구조문 대비표 포함)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분노 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분노 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분노 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

제3조에 제4항, 제5항, 제6항,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분노 수집·운반업자가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,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⑤ 폐업지원금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.
- ⑥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⑦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노수집·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대행)	제3조(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대행)
① -----	① -----
② -----	② -----
③ -----	③ -----
<신 설>	④ <u>분뇨 수집·운반업자가 법 제56조</u> <u>및 제56조의2, 동법 시행령 제33조</u> <u>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</u> <u>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
	⑤ <u>폐업지원금은 「공익사업을 위</u> <u>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</u> <u>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6조를</u> <u>준용하여 산정한다.</u>
	⑥ <u>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</u> <u>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 <u>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</u> <u>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
	⑦ <u>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</u> <u>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</u> <u>뇨수집·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</u> <u>안된다.</u>